

제322회 정례회
2013. 7. 17.(수)

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정책복지위원회

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3. 7. 17(수)
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13년 6월 21일

○ 회부일자 : 2013년 6월 25일

다. 상정일자 : 2013년 7월 2일

○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강성조 기획관리실장)

가. 제안이유

-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및 시중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지역개발채권 유통금리가 발행이율에 근접하고 있어,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을 인하코자 개정하려는 것임

※ 금리하락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 인하 권고(안전행정부)

나. 주요내용

-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 인하(안 제6조)
 - 연 2.5% 복리 → 연 2.0% 복리
 -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은 유통금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3. 검토보고 요지

(정책복지 전문위원 박기순)

- 동 조례안은 시중금리의 하락 추세에 대응하여 채권에 대한 가수요를 방지하고, 지방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행정부의 조례 개정 권고(2013.5.2)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 단체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
- 지역개발공채의 발행이율을 현재 연 2.5%에서 연 2.0%로 조정하여 현재 지역개발공채 유통금리 2.79%(13.5.6.)보다 0.79% 낮게 책정하였고, 향후 금리변동에 따른 탄력적 대응을 위해 발행이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행규칙으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
- 다만, 채권 발행이율의 인하와 관련하여 현재 시행규칙에서 연 3.5%로 정하고 있는 기금 용자이율의 조정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연 2.5% 복리”를 “연 2.0% 복리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2항의 발행이율은 유통금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정안
<p>제6조(공채의 발행기간 및 이율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공채의 발행이율은 <u>연 2.5% 복리</u>로 한다.</p> <p>③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6조(공채의 발행기간 및 이율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연 2.0% 복리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제2항의 발행이율은 <u>유통금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.</u></p>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공기업법

제19조(지방채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.

1. 경상적(經常的)인 운전자금(運轉資金)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2. 회전기금(回轉基金)의 재원(財源)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3. 건설비 또는 개량비에 충당하거나 유사사업의 매수 자금으로 필요한 경우

② 특별시, 광역시, 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 또는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(이하 "대도시"라 한다)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거나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.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조례로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·허가·인가를 받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
2.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·출연(出捐)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
3.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·출연한 법인과 용역 계약 또는 물품 구매·수리·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

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절차, 매입 대상별 금액, 채권등록 방법, 이율 및 상환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.